

行政法分科討議

司 會 金 伊 烈*

分科討議에 들어가자 먼저 全南大의 金漢基 院長께서 地方大學에서의 資料難 등의 狀況에 기가 있었다. 慶熙大 金南辰 教授는 두 분 發表者의 課題와 關聯하여 學生들의 進路問題의 妥結方案과 轉換期의 行政法 理論에 대한 學者들의 共同研究問題를 具體的 課題로서 提示하였고, 資料入手難의 解決方案으로 Legal Center의 設立을 提案하였다.

다음으로 靜態學的 行政學으로부터 動態學的 行政學으로서의 變化와 比較行政學의 必要性에 關係 言及되었고, 行政作用에 있어서 基本目標에 適合한 意思決定目標基準이 強調되었다.

또한 崔光律 辯護士는 學界와 實務界의 相互交流의 必要性을 強調하였고, 現在의 國內의 Legal Service 實態分析을 하면서 法律家에 대한 現實的 需要急增에 對處하기 위한 法曹人力養成의 問題를 提示하고 아울러 傳統的 法學教育을 받은 사람들이 實際에서는 外面당하고 진혀 엉뚱한 사람들이 國民을 위한 Legal Service를 하고 있는 점을 批判하였다.

이 問題에 對하여 金道和 議員도 共感하면서 現行國家考試制度로서는 이 問題의 解決이 困難함을 얘기하면서 이는 大學教育의 問題로 환원시켜 解決해야 하며 이를 國家的 次元에서의 綜合的 人力需給對策의 一環으로서 本格的으로 다루어야 할 時期라고 하였다.

또 한편 徐元宇 教授는 行政法과 行政學의 關係에 대해 言及하면서, 이의 最近動向이 行政學의 關心이 종래의 內部的 管理의 問題에서 外部的인 行政責任問題 등으로 옮겨가는데 대해 行政法은 종래의 對外的 問題로부터 政策決定問題 등과 같은 內部的이고 專門的·技術的·政策的 次元의 問題에 대한 法的統制로 關心이 옮겨가고 있는 점을 指摘하였다. 또한 實際行政에의 法的 介入限界로서, 恣意性介入與否判斷과 같은 節次的 客觀性에 關係 法的 統制를 들고 있다. 하여튼 時代의 變遷이 종래의 教科書의 行政法學으로 다룰 수 없는 問題들을 提起케 할 것이고 이에 우리도 傳統的인 思考方式自體를 修正해야 할 時代가 到來하였음을 強調하였다.

* 中央大學校 法科大學 教授